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1.)

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 능 호]

목 차

1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3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02.

나. 제 출 자 : 권재경 의원 대표발의
(권재경 · 심재수 · 최정환 · 김태경 의원)

다. 회부일자 : 2018. 11. 05.

2. 개정이유

○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시 그리는 벽화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그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을 위한 벽화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을 신설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도시건축과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8. 10. 25. ~ 10. 30.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 시 벽화 조성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퀘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시행일 : 2017.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이란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 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

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조성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 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 마련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7.11.29 조례 제2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11. 0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11. 05.

2. 개정이유

- 경기침체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비용 지원에 대한 대출금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경영안정자금 이자비용 지원에 대한 대출금 범위 확대.(안 제5조)
 - 2천만원 이내 ⇒ 5천만원 이내
- 나. 명칭변경.(안 제6조)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착한가게’를 ‘착한가격업소’로 변경.
-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8. 9. 28. ~ 10. 18.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비용 지원에 대한 대출금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현행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창업 및 경영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규모, 지원조건, 선정기준, 신청절차 등의 세부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제외 대상) ①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차보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3. 소상공인이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의 신용보증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인 자. 다만, 증·개축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2.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③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사치·향락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은 제1항의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이차보전금 등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2. 경영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연 2.5퍼센트 이내 이자
3. 신용보증 수수료의 50퍼센트 이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착한가게 특례 지원) 군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연 3.0퍼센트 이내 이자
2. 쓰레기봉투, 시설 개·보수사업비 등

제7조(지원 절차)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확인 과정을 거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8조(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① 군수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③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 내역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장을 휴·폐업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4.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11. 02.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11. 05.

2. 개정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절차를 마련하여 공유재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로 위임된 의회 동의절차를 신설.(안 제12조제4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름.
- 나. 법제처 알기 쉬운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을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 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0. 1. ~ 10. 22.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의회 동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등 변동사항 대하여 개별법에 따른 각각의 조례로 규정하기보다 총괄적인 공유재산 관리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약칭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70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13. 7. 30.>
[전문개정 2010. 4. 1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 공유재산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목개정 2015. 1. 20.]